

## p213 추가

### 가. 수급인의 주된의무

- (㉔)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p216 추가

### 나. 담보책임의 기간

- (㉑) **제척기간** 민법 제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 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대판 1990.03.09. 88다카31866).
- (㉒)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대판 2012.11.15. 2011다56491).
- (㉓)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1.15. 2011다56491).<sup>2)</sup>

---

2)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시한 이후에 나온 판례이다. 표현이 명확하고 깔끔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판례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쓰였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가 어려운 지문이다.

p216 추가

나. 손해배상청구권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원칙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시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03.10. 99다55632).
- (㉢) 하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도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8.03.13. 97다54376).
- (㉣) 하자가 중요하고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다더라도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대판 2016.08.18. 2014다31691, 31707). 건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건물 등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등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6.08.18. 2014다31691, 31707).